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1 4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5가합63162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
원 고 ○○산업 주식회사
용인시
대표이사 박A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담당변호사

피 고 1. 주식회사 ①①① (변경전 상호 : 주식회사 111코리아)
김포시
대표이사 정BB

2. 정②②
김포시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
담당변호사

변 론 종 결 2016. 4. 26.
판 결 선 고 2016. 5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2. 6.경 피고들과 사이에, 원고와 피고 정②②이 금형을 제작하여 냉장고 식품보관용기 및 위 식품보관용기용 뚜껑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제품’이라 한다)을 생산하고, 피고 주식회사 ①①①(이하 ‘피고 ①①①’라 한다)가 위 식품보관용기 홈쇼핑 판매를 담당하되, 피고 ①①①는 홈쇼핑으로 판매되는 제품 개수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,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정②②이 나누어 가지며,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는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하였다.

나.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완성되자, 피고들은 2012. 9. 4. 이 사건 제품 중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 출원신청을 하여 2012. 12. 5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았고, 2012. 8. 16. 이 사건 제품 중 식품보관용기 뚜

경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 출원신청을 하여 2014. 3. 21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았다.

다. 원고와 피고 정②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고, 피고 ①①①는 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나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2013. 6. 10.경 거래가 중단되었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6,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위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피고들이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.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이 2013. 6. 10.경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됨으로써, 이 사건 약정 유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‘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계약’ 역시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,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디자인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 주장

피고들이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생산을 위하여 3D 도면을 만드는 작업에만 참여하였을 뿐,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

한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.

3. 판단

가. 먼저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.

갑 제3호증의 1, 2,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, 증인 윤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 이사인 정DD과 윤CC, 피고 정②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장고 식품보관용기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식품보관용기를 고안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을 함께 구상한 사실, 윤CC이 이 사건 제품 2D 도면을 작성하였고, 원고가 2012. 7. 16. **디자인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제품 디자인개발을 위한 3D 도면 작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와 피고 정②②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나아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데(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), 디자인보호법상 위 공유관계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,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(민법 제278조 참조).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,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.

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정②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등록

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 1/2씩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나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의 단독 창작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 전체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다만 이 사건 청구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 중 원고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, 그 청구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.

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으로서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는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정권

판사 권세진

판사 윤성식